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창업기업,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3조제1항제1호)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행 상

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

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안 제9조제5호)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로 제한.

다. 창업 및 인수·합병 기업 등 현장 애로해소(안 제9조2호 및 5호)

1)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고속성장 기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2) 기업 인수·합병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없이 졸업하였으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의 범위, 기관 간 정보의 제공·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마. 통합관리 시스템 전담기구 운용(안 제10조의4 신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업무, 지정방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

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업일"이란"을 ""창업일 또는 폐업일"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폐업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한 날"을 "한 날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폐업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업종과"를 "업종과 제7조에 따라 산정한"으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으로,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아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및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및 및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일"을 "말일(합병·분할·창업·폐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제1항 중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중소기업 범위 조정 심의회) ①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청이 고시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를 “상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매출액은”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을 "5개"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를 "환율로"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을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근로자수등"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해당 연도에 창업이나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의 산정방식을 따르고 폐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중소기업으로 보던 기업이 다시 동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현황 및 지원이력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분석

3. 중소기업 지원 통계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연계가 어려운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상시적으로 자료·정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4항의 자료·정보와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제공

2. 제3항에 따라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와 협의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해당 자료·정보의 제공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기능개선,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정보의 관리, 가공, 제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③ 정부는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 및 제9조제2호, 제10조의3, 제10조의4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이 영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3조 및 제3조의3에 따라 인정한 적용 기간 경과 후 판단한다.

③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던 기업이 이 영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9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기타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하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그 지배기업의 매출액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그 종속기업의 매출액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그 지배기업의 매출액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그 종속기업의 매출액에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그 지배기업의 매출액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매출액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그 손자기업의 매출액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300	400	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창업일 또는 폐업일"이란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 등기일	가.---------- 법인설립 등기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폐업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나.---------- ----- 한 날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폐업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1. ----------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과 제7조에 따라 산정한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 <단서 삭제>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2.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 ---. ----------

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 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다.---------- ----------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 아니-----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② ---------- ---------- ---------- ---------- ---------- ----------.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1.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및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및 및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 -------------------- 말일(합병·분할·창업·폐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 ------------- ----------------------------- ----------------------------- ----------------------------- ----------------------------- ----------------------------- ------. -------------------

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 ---------- ---------- ---------- ---------- ---------- ---------- ---------- ---------- ---.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단서 신설>	1. ---------- ---------- ---------- ---------- ---------- ---------- -----.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 ----------

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4(중소기업 범위 조정 심의회) ①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청이 고시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상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제7조(매출액) ①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 ----------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 ---------- ---------- ----------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 설>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

	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

	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2호나목----------. ② (현행과 같음) ③ ---------- 5개 ---------- 환율로 ----.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생 략)	제7조의4(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①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④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해당 연도에 창업이나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의 산정방식을 따르고 폐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유예 제외)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5.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중소기업으로 보던 기업이 다시 동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

	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현황 및 지원이력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분석 3. 중소기업 지원 통계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연계가 어려운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상시적으로 자료·정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4항의 자료·정보와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제공 2. 제3항에 따라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와 협의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해당 자료·정보의 제공
<신 설>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기능개선,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정보의 관리, 가공, 제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③ 정부는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